

우리의 목표

Housing Center는 효과적인 연구, 교육, 시민활동의 제공을 통하여 평등 주택 (fair housing)과 다양한 지역사회를 촉진하고, 동북 오하이오의 주택차별 근절을 위하여 일합니다.

1983년부터 Housing Center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동북 오하이오의 거주인들에게 균등한 주택과 다양한 공동체 기회를 촉진해왔습니다:

연구

- Analyses of Impediments to Fair Housing
- Community Lending Factbooks
- Reports on Local Occupancy Codes
-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Ohio Mortgage Lending
- Obtaining and Maintaining Housing for People with Mental Health Disabilities
- Landlord Training Manuals, and
- The State of Fair Housing in Northeast Ohio

교육과 봉사활동

- 주택 전문직원을 위한 연수
-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를 위한 영어와 에스파냐어 프로그램
- 지역사회 이벤트를 위한 "Street Teams"
-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상담국
- 영문, 에스파냐어, 아랍어, 한국어 안내책자

집행

- 임대, 매매, 주택소유자 보험, 대차시장의 차별적인 관행들 감시

시민활동

- 효과적인 평등 주택법을 제안과 집행
- Greater Cleveland Fair Housing Consortium 편의 도모
- 국가, 주, 지역 단체들과의 협력



The Housing Center
Housing Research & Advocacy Center

2728 Euclid Avenue, Suite 200
Cleveland, Ohio 44115
Phone: (216) 361-9240
Fax: (216) 426-1290
Email: info@thehousingcenter.org
www.thehousingcenter.org

MEMBER OF
GREATER CLEVELAND
COMMUNITY SHARES

This pamphlet is intended to convey information. Nothing in this pamphlet should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nor should this pamphlet be regarded as creating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Funding provided by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2013 Housing Research & Advocacy Center

FAIR HOUSING

장애인을 위한 공정 주택



The Housing Center
Housing Research & Advocacy Center

누가 장애인으로 간주되는가?

연방 그리고 주정부의 공정주택법 (fair housing laws)은 장애에 기반한 주택 차별을 금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또는 당신과 함께 살고 있거나 당신과 연관된 사람이) 아래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평등주택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삶의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주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
- 또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병력이 있거나,
-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장애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되 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청각, 시각, 이동성 장애
- 암
- 만성적 정신질환
-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 / 에이즈 바이러스 (HIV)
- 발달장애
- 알콜 중독 또는 과거 마약, 약물 남용



접근성 필요조건 (Accessibility Requirements)

1991년 3월 3일 이후 사용을 위해 지어진 다가구 건물은 평등 주택법 개정안, 미국장애인법, 현지 건축규정에 의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Housing Cente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것이 금지되는가?

장애에 기반한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불법행위입니다:

- 주택의 임대, 매도, 또는 협상을 거부하는 행위
- 주택 매매 또는 임대에서 다른 조건, 조항, 특권을 붙이거나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의 멤버십 또는 시설에 접근들을 다르게 설정하는 행위

- 주택을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
- 대출이나 대출을 구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 주택 담보 대출 또는 주택소유자 보험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보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대출에 다른 비율과 요금 등 다른 조건 또는 조항을 부과하는 행위
- 재산 감정평가에 차별하는 행위
- 거짓으로 주택 가능여부를 부인하는 행위
- 소유주의 매각이나 임대를 설득하는 행위 (blockbusting)
- 장애인 또는 다른 보호 되어야 할 계층을 제한 또는 선호하는 광고나 성명을 하는 행위
- 장애의 존재 또는 특성을 조사하는 행위 (임대주는 합리적인 조정과 수정을 위해 장애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적 보호

합리적인 조정:

장애인이 집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주택제공자는 규칙, 정책, 관습,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 “애완 동물 금지”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동물 (service animal)을 허락
- 장애인용 주차공간 지급
- 세입자에게 동거 도우미 허락
- 장애를 가진 세입자가 한 아파트 건물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허락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세입자가 3층에서 1층으로 이사할 경우 추가요금 없이 이사를 허락해야함)

합리적인 수정:

장애를 가진 입주자가 집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주택제공자는 그들의 집 또는 건물의 공용 면적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이러한 수정들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세입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하고, 임대주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세입자에게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수정의 사례들입니다:

- 출입구 확장
- 화장실 가로대 설치
- 램프 설치
- 캐비닛의 높이 낮추기
- 자동 수도꼭지 설치

도움을 요청할 곳?

인증, 출생지, 종교, 성별, 피부색, 가족사항, 장애, 병역여부, 혈통,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당신이 주택 차별의 희생자라고 생각된다면, Housing Research & Advocacy Center의 216-361-9240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Ohio Civil Rights Commission 1-888-278-7101 또는 www.crc.ohio.gov로 연락하시거나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1-800-669-9777 또는 www.hud.gov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1-800-927-9275로 문의하세요. HUD는 통역관, 테이프, 점자 자료를 통해 읽기와 HUD 서식의 작성을 돕고 있습니다.